

예산총칙

2025년도 추경 4 회

제 1 조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2,965,770,990	88,973,130
일반회계	2,710,663,933	81,319,918
특별회계	255,107,057	7,653,212
공기업특별회계	212,617,427	6,378,523
상수도사업특별회계	77,387,014	2,321,61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35,230,413	4,056,912
기타특별회계	42,489,630	1,274,689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3,810,121	414,304
농촌소득금고특별회계	290,275	8,708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1,894,193	56,826
교통사업특별회계	23,534,926	706,048
대지보상특별회계	8,243	247
수질개선특별회계	2,874,505	86,235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77,367	2,321

제 2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 예산』 과 같다.

제 3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4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으로 한다.

제 5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명시이월사업은 별첨 『명시이월 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예비비는 『781,591천원』 으로 한다.

제 7 조 2025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채한도액은 『86,200,000천원』 으로 한다.

제 8 조 최종 추가경정예산 성립후 국가 또는 도 등으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전액이 교부된 경비는 당해년도 예산으로 간주처리한다.